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6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거창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법인격을 정함(안 제2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다.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의 기획·운영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운영재원을 정함(안 제4조)

-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마. 수익사업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바.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 할 수 있음.

사. 검사·보고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15,550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없음
- (2)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9. 19. ~ 10.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문화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거창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의 기획·운영
7.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8. 문화예술관련 국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탁·대행·보조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 및 법정 운영 경비 및 축제행사 경비 보조
- 관련 조문: 안 제4조(운영재원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총 비용(a - b)	3400	2,850	2,850	2,850	2,850	14,800	
세출	국비			300	300	600	
	도비			200	200	400	
	군비	3,550	3,000	3,000	2,500	2,500	14,550
	소계(a)	3,550	3,000	3,000	3,000	3,000	15,550
세입	소계(b)	150	150	150	150	150	750

3. 관련 의견

- 높아진 지역 문화수준에 발맞추어 문화예술의 전문화, 효율화
-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절감을 도모코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출연금: 50백만원
- 축제 등 행사 보조: 1,900백만원
- 법정운영보조: 600백만원
- 경상사업 보조: 500백만원
- 자본보조: 500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신 판 성